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소 방 공 무 원 교 육 훈 련 규 정
전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1983년 전부개정 이후 장시간이 지나 조문의 구성체계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정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고, 신임교육 강화, 기본교육 확대 등 소방청 주요 정책사항 반영 및 민간·공공 교육 확대 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임교육과정 졸업기준을 강화함

- 1) 현행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득점시 수료”하던 것을
- 2)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부과목의 성적이 각각 만점의 60점 이상 득점시 졸업사정 절차를 거쳐 졸업”하도록 함

나. 계급별 기본교육을 확대·정비함

- 1)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는 계급의 범위를 소방위까지 확대함
- 2) 기본교육의 명칭을 기존 “지휘역량교육”에서 “관리역량교육”으로 변경하여 ‘관리자’로서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지휘관’으로서의 역량 강화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해 심화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함

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및 민간개방 확대

- 1)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장이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전체 소방공무원에게 개방하거나, 교육훈련기관별 특성화된 교육훈련과정을 지정하여 전국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민간부문과 소방 외 공공부문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장이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과 교육훈련용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훈련의 유형 구분과 교육훈련의 방법 구분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교육훈련 유형별 교육훈련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자기개발학습 유형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향후 직무와 관련된 자발적 학습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점수 인정 근거를 마련함
마.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의 역할·분류·명칭을 체계화 하고 교수요원의 계급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명예교수·객원교수·겸임교수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바.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별 교육과정을 영에서 정하던 것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탄력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전부개정령안 별첨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의 소방기관을 말한다.
2.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3. ‘교육훈련기관교육’이란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직장훈련’이란 소방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5. ‘위탁교육훈련’이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단기 교육훈련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관련 시설·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 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방청 기획조정관
2. 소방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3. 중앙소방학교의 장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
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5.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6.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방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4조(교육훈련의 기회) ① 교육훈련의 기회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
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교육과정별 우선 순위에 따라 소방기관별로 교육인원을 균등히 배정해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의 구분)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전문교육훈련·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교육훈련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신임교육’이라 한다)과 승진후보자(「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

정」 제2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이 받는 교육훈련(계급에 따라 ‘관리역량교육’ 또는 ‘소방정책관리자교육’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제고하고 필요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훈련이다.

③ 전문교육훈련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④ 기타교육훈련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을 말한다.

⑤ 자기개발 학습은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연구활동을 말한다.

제6조(교육훈련의 방법)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방법으로 한다.

② 기본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교육으로 실시한다.

③ 전문교육훈련은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교육으로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관에 의해서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 소방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원격강의시스템 등 교

육훈련용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⑤ 소방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은 가능한 한 그에 따른 업무의 정체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계급별 교육훈련) ① 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에게 임용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입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된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라 임용 전에 신입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임용된 후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입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소방위·소방경·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소방위·소방경·소방령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계급별로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역량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계급에 임용되기 직전 또는 해당 계급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신입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계급의 관리역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소방정 계급의 소방공무원은(소방정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정책관리자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훈련을 받아

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계획) ① 소방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기관교육, 위탁교육훈련,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
3.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자기개발학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시·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교육훈련의 준비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및 협업·개방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시도지사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탁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하여 시·도 간에 상호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과 소방 외 공공부문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업·개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전체 소방공무원에게 개방
2. 교육훈련기관별로 특성화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전국단위 운영
3. 교육훈련과정, 교재, 교육훈련용 콘텐츠 등의 공동 개발·활용

4. 교수요원, 교육훈련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상호 활용
5. 민간부문 및 소방기관 외 공공부문에 대한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
용 시설 등의 개방
6. 그 밖에 각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사항의 상호 지원

제10조(교육훈련의 성과측정 등) ① 소방청장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과 소방기관에서 실시한 직장훈련 등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분석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교육훈련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비의 지급)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해야 하며, 입학금·등록금 그 밖의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무복무) 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입교육을 받고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위탁교육훈련 또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입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당 소방공무원의 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보수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 본인이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14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과 과정별 대상·기간·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 교수요목, 기간, 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① 소방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소방기관장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순위, 신규채용일 또는 승진임용일, 계급, 담당업무, 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장등은 교육훈련 개시 10일 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설치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기관장등에게 교육훈련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기관장등은 지체 없이 적합한 교육훈련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 개시 전까지 등록해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 중 해당 교육훈련기

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을 받은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또는 졸업 후 10일 이내에 그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료 및 졸업) ① 각 교육훈련과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의 교육훈련성적을 받으면 수료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평가를 생략하고 교육훈련대상자의 교육훈련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입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졸업사정(査定)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70점 이상인 사람
2.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각 과목의 교육훈련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60점 이상인 사람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졸업사정을 실시할 때 교육훈련대상자의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졸업사정 결과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졸업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강시간 요건, 졸업사정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수료 및 졸업 기준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9조(퇴교처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그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료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경우
4.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5.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7.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기피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0조(수료 또는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제18조에 따른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듭 수료 및 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또는 제78조의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또는 직권면직의 동의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교수요원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1. 강의 또는 훈련
2. 교과연구 및 교재집필
3. 교육훈련과정 설계·운영 및 교육훈련성적 평가
4. 교육훈련대상자의 상담·지도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을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중에서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하고 교육훈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을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훈련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 및 제3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담당할 분야에 관련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4.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24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 기간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25조(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평가)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훈련, 교육운영 등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주기적으로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요원의 체계적 관리·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교수역량을 평가하여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선발,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교수요원의 전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제27조(교육훈련시설)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을 통하여 직무역량 및 현장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에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8조(학칙 등) ① 교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칙 등으로 정한다.

1. 입교 · 퇴교 · 상벌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성적 평가 및 수료 · 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4. 교내생활에 관한 사항
5. 수탁교육생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대상자의 표지에 관한 사항
7. 교수요원 등의 선발 · 위촉 ·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등 전국적인 통일성을 요하는 내용과 관련된 학칙 등을 제정 · 개정 ·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생활관 입실)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교육훈련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달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

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공무원에 준한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직장훈련

제31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새로운 전문지식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기술 및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인별로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를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직장 내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직장훈련계획) 소방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직가치 확립 및 정부 시책(施策)에 대한 교육
2.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 및 개인 직무 전문기술훈련
3.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교육훈련

4. 체력향상을 위한 훈련

5. 개인별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서별·직무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

제33조(직장훈련담당관) ①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의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제34조(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감독하에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직장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교재 등의 준비
4. 그 밖의 직장훈련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의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4장 위탁교육훈련

제36조(위탁교육훈련계획)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의 기관 및 기간
3. 훈련의 종류별 분야별 인원
4.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5. 훈련대상자 및 훈련 이후의 보직 계획
6. 훈련비의 내역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37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경력을 갖춘 사람
4. 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6.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그 밖의 요건을 갖춘 사람

제38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소방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

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 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기관의 학칙 등 훈련대상자로서의 의무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거주지·신상·훈련성적·훈련진도·훈련결과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훈련기관 또는 훈련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고자 할 때

⑤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귀국한 후에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복귀명령)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고 그 사실을 수탁교육

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제38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40조(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의 관계) ① 제36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성적을 확인해야 한다.

②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으로 본다.

제41조(국외훈련이수자) ①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귀국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하여 교육훈련의 자료로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요건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입교육과정의 졸업기준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입교하는 신입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처분·절차 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처분·절차 및 행위로 본다.

제4조(계급별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에 따라 신입교육·지휘역량교육·전문교육을 받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이 영 제7조에 따라 신입교육·관리역량교육 또는 소방정책관리자교육·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에 따라 진행중인 신입교육·지휘역량교육·전문교육은 이 영 제7조에 따른 신입교육·관리역량교육 또는 소방정책관리자교육·전문교육훈련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8호의 “제30조제5호”를 “제37제5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13조 관련)

1. 제11조제1항제1호 해당자	소요경비 전액
2. 제11조제1항제2호 해당자	소요경비 $\times \frac{1}{2}$
3. 제11조제1항제3호 해당자	소요경비 $\times \frac{\text{의무복무월수} - \text{근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 (주)

1.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2. 국외훈련을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제11조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11조제3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text{추가반납액} = \text{소요경비} \times \frac{1}{2} \times \frac{\text{의무복무월수} - \text{근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기준(제27조 관련)

구분	교육훈련시설
1. 옥내 훈련시설	가. 전문구급 훈련장
	나. 수난구조 훈련장
	다. 화재조사 훈련장
	라. 소방시설 실습장
	마. 가상현실 훈련장
2. 옥외 훈련시설	가. 소방종합 훈련탑
	나. 산악구조 훈련장
	다. 소방차량 및 장비조작 훈련장
	라. 실물화재 훈련장
	마. 대응전술 훈련장
3. 교육지원시설	가. 업무시설
	나. 강의시설
	다. 관리시설
	라. 편의시설
	마. 주거시설
	바. 저장시설

비고

1. 교육훈련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 시설기준 및 보유장비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교육훈련기관이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비고 제1호에 따른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갖춘 훈련시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교육훈련시설별 보유장비기준은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7284